외국인교원규정

1997.03.01.제정 2002.10.01.일부개정 2006.08.01.일부개정 2009.09.01.일부개정
2011.04.20.일부개정 2012.07.22.일부개정 2019.02.26.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교무팀>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의 '조교수(외국인)'(이하 "외국인교원'이라 한다)에 대한 임용 및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6.)

제 2 조 (외국인교원의 범위)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만을 소지하고 본 대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6.)

제 3 조 (임용기준) 초빙 고용되는 외국인교원은 본 대학교의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하거나 강의의 실질적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 2019.2.26.)

1.「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교육사증을 취득(가능)한 자
2. 대한민국에서의 체류허가기간이 고용기간보다 길거나 기간연장이 가능한 자
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②(삭제 2006.8.1.)

③(삭제)

제 5 조 (절차) 외국인 교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1, 2011.4.20., 2012.7.22., 2019.2.26., 2021.6.1., 2021.6.1.)

1. 외국인 교원의 신규채용 계획 시 총장은 전공과목 담당의 경우 해당 학(부)장, 어학과목 담당의 경우 어학과목 운영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의2. 신규채용을 위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채용 요청 학과(학부,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외국인교원채용위원회(이하 "채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19.2.26.)

1의3. 채용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할 경우 총장에게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신설 2019.2.26.)

1의4. 채용위원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 고용계약의 조건에는 직위, 계약기간, 강의시수, 임무,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신규임용 및 재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을 임용 만료일로 한다.

4. 외국인교원은 매학기 초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다.

5. 임용이 확정된 외국인교원은 학기 개시 전까지 입국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외국인 체류등록, 체류연장 및 기타 필요한 절차는 외국인교원 자신이 책임을 진다.

7.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인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임용 심의 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8. 제7호에 규정된 재임용 심의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임용권) 외국인 교원의 임용은 전공과목 담당의 경우 해당 학(부)장, 어학과목 담당의 경우 어학과목 운영 주관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8.1, 2009.9.1, 2011.4.20, 2012.7.22.)

1. 내지 3. (삭제 2006.8.1.)

제 7 조 (보수)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임용될 교원의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지급하며, 재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전임교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보수를 증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

제 8 조 (처우) 외국인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로 하는 항공료, 주택제공 등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상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조 (구비서류) ①외국인교원의 신규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9.9.1.)

1. 이력서(국문 번역본 포함) 1부 (개정 2009.9.1.)
2. 학력증명서 1부 (개정 2009.9.1.)
3.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09.9.1.)
4. 연구실적목록 1부(전공강의에 한함) (개정 2009.9.1.)
5.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09.9.1.)
6. 증명사진 2매 (개정 2009.9.1.)
7.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개정 2009.9.1.)

②제1항의 서류이외에 입국 및 관련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해당 외국인교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1.)

제10조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1. 외국인을 해임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개정 2009.9.1.)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9.9.1.)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계약기간, 근무처)을 변경한 때 (개정 2009.9.1.)

제11조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 6.8.1.)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하는 외국인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 제6조는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3호는 2019.3.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외국인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